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9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김현정 · 이주희 · 김문수
박 정 · 이수진 · 이정문
강준현 · 황명선 · 민병덕
차지호 · 김남근 · 박홍배
복기왕 · 최혁진 · 박정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며,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 군수·정비, 정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국훈장 수훈자와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소방공무원으로”를 각각 “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제13조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군무원 묘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호국원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라. -----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 -----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 -----.
<신설>	마.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군인·군무원 묘역 가.·나. (생략) <신설> 5. ~ 8. (생략) ②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군무원 묘역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